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 2021년도 임시총회 심의자료(안건)

### 1. 심의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2. 심의기간

2021년 4월 6일(화)~4월 13일(화)

### 3. 제안배경

지난 제2차 이사회 및 제1차 평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한 바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추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 4. 회의 진행 보고

일 시	내 용	비고
2021.03.05.(금)	2021년도 제2차 이사회 -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심의 의결 - 우리학회 정관 개정 심의 의결	ZOOM 회의
2021.03.09.(화) ~2021.03.12.(금)	2021년도 제1차 평의원회 -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동의 - 우리학회 정관 개정(안) 동의	서면회의

### 5. 정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b>제30조(재정)</b>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신 설) 6. 기타 수입금	<b>제30조 (재정)</b>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b>각종 기부금</b> 6. 기타 수입금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후 기부금 수입금도 본회의 재정에 충당하고자 함.
<b>제34조(회계의 공개) 신 설</b>	<b>제34조 (회계의 공개)</b>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위한 필수 조항을 신설함.



제34조(해산) (동일생략)	제35조(해산) (동일생략)	조번호 변경
제3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위한 필수 조항으로서 문구를 수정함.
제36조(정관개정) (동일생략)	제37조(정관개정) (동일생략)	조번호 변경
제37조(규칙) (동일생략)	제38조(규칙) (동일생략)	조번호 변경
제38조(보고) (동일생략)	제39조(보고) (동일생략)	조번호 변경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총회의 소집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삭 제)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규정을 삭제함.